

세법연구 09-01

영국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연구

2009. 6

김진수 · 김정아 · 정경화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영국의 구(舊)조세불복제도	10
1. 개 관	10
2. 행정적 조세불복제도	11
가. 임의적 절차	13
나. 필요적 절차	16
3. 사법적 조세불복제도	35
가. 사법제도	35
나. 조세소송제도	44
4. 비공식적 구제방법과 옴부즈만	50
가. 재심리(Tax Review)	50
나. 의회 옴부즈만(the Parliamentary Ombudsman)	52
III. 새로운 조세불복제도	57
1. 개 관	57
2. 제1심 조세심판원(Tax Chamber of the First-Tier Tribunal)	58
가. 제1심 조세심판원 구성	58
나. 제1심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대상	60
다. 제1심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	60
라. 제1심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기한	61
마. 제1심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의 분류	61
바. 제1심 조세심판원의 심리절차	62
사. 제2심 조세심판원으로서의 불복청구	63

아. 제1심 조세심판원 불복청구의 철회	63
3. 제2심 조세심판원(The Finance and Tax chamber on the Upper Tribunal)	64
가. 제2심 조세심판원 구성	64
나. 제2심 조세심판원 절차	64
다. 제2심 조세심판원의 기타 권한	65
4. 사법적 조세불복제도	66
5. 비공식적 구제방법과 옴부즈만	67
IV. 시사점	68
1. 영국 조세불복제도의 특징	68
가. 개정 전의 조세불복제도	68
나. 개정 후 새로운 조세불복제도	69
2. 우리나라와 비교	71
3. 영국 조세불복제도의 시사점	72
참고문헌	74

표목차

〈표 II-1〉 영국의 심판청구 현황(2007년).....	12
〈표 II-2〉 2007~08년 고충건수가 많이 접수된 정부기관 top 5.....	56
〈표 II-3〉 2007~08년 옴부즈만 조사권이 결정된 주요 정부기관별 사안들.....	56
〈표 IV-1〉 우리나라와 영국의 조세심판기관.....	71
〈표 IV-2〉 우리나라와 영국의 조세소송.....	72

그림목차

[그림 II-1] 영국의 행정적 조세불복제도.....	12
-------------------------------	----

I. 서론

- 조세의 기본 원리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와 국민의 재산권 존중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에 따라 조세불복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과 조세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의 보장을 위한 위법·부당을 시정하는 기능을 충족시켜야 함
 - 행정 측면에서 과세관청 조세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보장을 위한 행정통제력과 납세자 측면에서 완전한 권리구제의 조화가 필요함

- 조세불복제도는 위법·부당한 조세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구제하는 제도, 즉 조세행정의 분쟁을 강제적·유권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장치임
 - 또한 조세불복제도는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 우리나라의 국세처분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기법 56조 2항)
 -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청에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기 통제를 하고, 법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 주요 외국들이 조세법원(Tax Court)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 별도의 조세법원(Tax Court)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조세불복제도면에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제도가 많았음

- 그러나 2009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이러한 영국의 조세심판제도에 다수의 개정사항들이 채택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었음

- 2009년 4월 이전 영국의 조세불복제도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조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일반위원회(General Commissioner) 또는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er)의 심판청구 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위의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원의 재판을 일반소송절차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음
 -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분쟁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며, 분쟁의 법률문제만이 법원으로 넘어감

- 2009년 4월부터 새롭게 채택된 조세불복제도에서는 쟁송 분야별로 나뉘어 있었던 기존의 여러 심판원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 심판원으로 구성하였음
 - 새로운 단일 심판원은 제1심 조세심판원(Tax Chamber of the First - Tier Tribunal)과 제2심 조세심판원(Finance and Tax Chamber in the Upper Tribunal)의 2심제로 구성됨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세소송의 경우, 제1심 조세심판원과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 불복 의사가 있으면 상소(tax appeal)에 의하여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그 외에 영국에서는 납세자의 불만을 재심리하는 준공식적 방법인 의회 옴부즈만제도(the Parliamentary Ombudsman)와 재심리제도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영국의 조세불복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 개선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있음
 - 이를 위해 2009년 4월 이전 기존의 영국 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행정적·사법적 조세불복제도로 나누어 연구·분석하였으며, 또한 새로 시행되는 영국의 조세불복제도 변경안을 소개하고 양 절차를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살펴보려 함

□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선 영국의 기존 조세불복제도, 제Ⅲ장에선 2009년 4월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새로운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Ⅱ. 영국의 구(舊)조세불복제도

1. 개 관

- 세무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국의 조세불복의 필요적 절차로는 일반위원회(General Commissioner),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er),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VAT and Duties Tribunals), 706조 심판원(Section 706 Tribunal)이 있음
 - 조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직접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신청하여 심판결정을 받고,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은 간접세, 706조 심판원은 아주 드물게 소득세및법인세법(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TA, 1988)하의 특정한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행한 후 심판결정을 받음
-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심리대상을 달리하는 같은 심급의 심판기관임
 - 조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선택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인지세 등)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위원회의 관할이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만을 관할함
- 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영국에서는 조세사건을 전담하는 조세법원이나 행정법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 있음
 -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등법원(High

Court)에서 조세를 심리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허가(leave)를 받아 최종심인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상소할 수 있음

- 조세심판원을 통한 불복제도와 상소(Tax Appeal)를 통한 불복 외에 기타 제도로 재심리(Tax review)와 옴부즈만제도가 있음
 - 재심리는 실정법상 인정되지 않는 구제제도로, 법원이 하급의 행정심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감시적 관할권(supervisory jurisdiction)의 행사로 이해될 수 있음
 - 의회 옴부즈만제도는 행정부의 과오 등에 의하여 국민이 입게 된 불만을 심리하는 준공식적 방법임

2. 행정적 조세불복제도

- 처분청의 고충담당자(Complaints Manager) 및 처분청의 장(Director)에 대한 이의신청과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과 독립된 심사위원회(The Adjudicator's Office)¹⁾에 대한 심사청구는 조세불복의 임의 절차임
- 일반위원회(General Commissioner),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er),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VAT and Duties Tribunals), 706조 심판원(Section 706 Tribunal)은 일종의 심판청구로서 세무소송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세불복의 필요적 절차임
-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직접세,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은 간접세, 706조 심판원²⁾은 아주 드물게 소득세및법인세법(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TA,

1) 세액공제청(Tax Credit Office), 평가원(Valuation Office Agency), 공공지도소(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파산관리청(The Insolvency Service)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임

2) 소득세및법인세법(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TA, 1988) 제706조에 의한 심판원은 대법원에 의해 임명된 의장과 재정 및 경제에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2인 이상의 패널로 구성됨. 존재 유무가 유명무실하여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평균 5회의 결정만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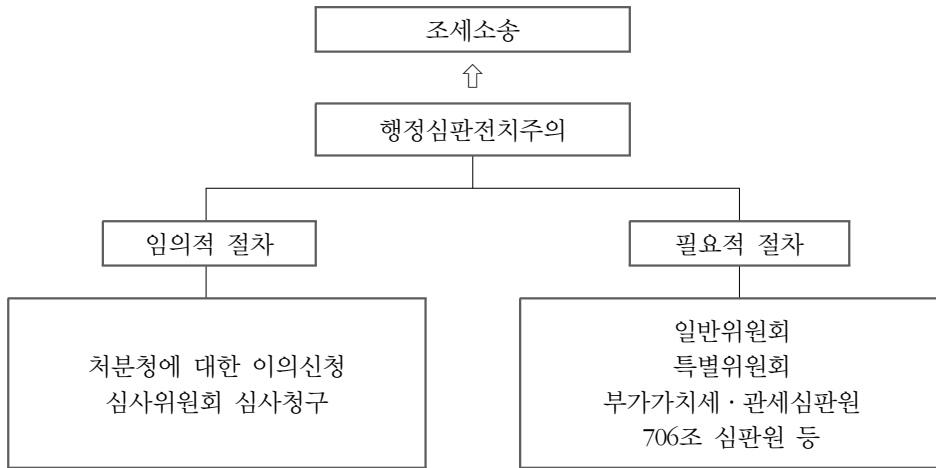
1988)하의 특정한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담당함³⁾

〈표 II-1〉 영국의 심판청구 현황(2007년)⁴⁾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		706조 심판원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소득세 (지연 신고에 대한 가산세)	20,000	8,000	50	-		-
소득세(기타)						-
법인세	750	n.a				5
부가가치세	-	-	-	2,300	500	-
관세, 소비세	-	-	-	270	100	-

자료: HM Revenue and Customs and the Taxpayer, 2007, 영국국세청

[그림 II-1] 영국의 행정적 조세불복제도



3) 영국의 지방세인 council tax의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가 council 정부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과세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함. 평가원(Valuation Office Agency)에 불복내용 제기(representations)와 valuation tribunal에 대한 공식적인 심판청구의 2단계 절차로 이루어져 있음

4)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의 심판청구통계는 접수 7,219건, 처리 5,421건(조세심판원)

- 그러나 국세청과 독립된 여러 개의 심판원으로 분리된 영국의 조세불복제도는 2009년 4월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법무부(Justice of Ministry)가 변화를 모색하였음⁵⁾
 - 조세불복제도 현대화의 목표는 조세불복제도의 단일화, 일관화, 비용효율화와 청구인의 만족도 향상에 두고 있음
 - 직접세와 간접세 모든 범위의 조세불복에 대해 새롭게 통합된 불복제도시스템은 확연히 국세청으로부터 독립될 것임
 - 개별 사건별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유연하게 구성된 조세불복 패널로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심리가 제공될 것임

- 새로운 조세불복제도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새로운 법적 구조임⁶⁾
 - 제1심 조세심판원(Tax Chamber of the First-Tier Tribunal)과, 제2심 조세심판원(Finance and Tax Chamber in the Upper Tribunal)의 2심제도로 구성되었음⁷⁾

가. 임의적 절차

- 영국 조세불복제도의 임의적 절차에는 처분청의 고충담당자(Complaints Manager) 및 처분청의 장(Director)에 대한 이의신청과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과 독립된 심사위원회(The Adjudicator's Office)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음

1)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식은 처분청의 고충담당자에게 전화, 서면, 팩스 혹은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음⁸⁾
 - 국세청(자진신고납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과 공항, 항

5) 일반위원회 가이드 p. 1(Tribunals Service)

6) <http://www.tribunals.gov.uk/Tribunals/News/news.htm#october31>

7) Tribunal Service's Strategic and Business Plan

8) 이름, 주소, 국민보험번호 등을 밝혀야 함. 서면, 팩스로 신청시에는 맨 위에 Complaints라고 기재하여야 함

만의 담당 부처별로 고충담당자를 두어⁹⁾ 청구인의 불복에 대하여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 보통 신청 이후 15일 이내에 답변을 얻을 수 있음

- 처분청 고충담당자의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다시 고충담당자의 장(senior officer)이 검토한 후에 최종 협의 결정을 내림¹⁰⁾
- 청구인의 불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음¹¹⁾

□ 청구인은 처분청의 최종 협의 결정 이후에도 불만족할 경우에는 국세청과 독립적인 기관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인(Adjudicator)에게 다시 심사¹²⁾를 청구하여야 함

2) 심사청구

□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과 독립된 심사위원회(The Adjudicator's Office)는 1993년에 신설되었으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심사청구는 반드시 국세청의 최종 처분절차(이의신청)가 종결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불복청구 결정 기간은 접수 이후 10일 이내임

□ 납세자의 확정신고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만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가 가능함

□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방법은 서면 혹은 팩스로 할 수 있으며, 가능한 빠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식(要式)을 구비하여야 함

- 청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국민보험번호)
- 처분청의 처분 내용, 자세한 불복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

9) <http://www.hmrc.gov.uk/dealingwith/complain.htm>

10) <http://www.hmrc.gov.uk/factsheets/complaints-factsheet.pdf>

11) 우편비용, 전화요금, 교통비, 자문료 등

12) 심사비용은 무료임

- 국세청의 과오납, 처리지연, 부정확한 충고, 처분과 관련된 태도,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평가함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법은 조정(mediation)¹³⁾, 권고안(recommendation letters) 제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함¹⁴⁾
 - 조정은 국세청이 불복에 대해서 재조사,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청구인과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임(예를 들어, 심사위원회가 국세청의 조세특례인정통칙(Extra Statutory Concessions)의 해석을 기존과 다르게 내릴 수도 있음)

- 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국세청은 권고안의 모든 처분을 하여야 함

- 심사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은 다음과 같음
 - 정부부처 정책 판단 문제
 - 독립적인 불복심판소에 불복청구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
 - 세법과 세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에 관한 논쟁
 - 국민보험, 세금공제
 - 법원에서 이미 고려중이거나 고려될 수 있는 이슈
 - 불복청구를 했거나 의회의 옴부즈만(Ombudsman)에서 조사 중인 문제

- 국세청,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불복할 경우 의회의 옴부즈만(Ombudsman) 등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¹⁵⁾

13) <http://www.hmrc.gov.uk/manuals/rdhmanual/RDH610.htm>

14) <http://www.adjudicatorsoffice.gov.uk/pdf/ao1.pdf>

15) <http://www.hmrc.gov.uk/dealingwith/complain.htm>

나. 필요적 절차

- 세무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세불복의 필요적 절차로는 일반위원회(General Commissioner),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er),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VAT and Duties Tribunals), 706조 심판원(Section 706 Tribunal)이 있음
- 영국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직접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위원회(General Commissioner) 또는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er)에 신청하여 심판결정을 받고,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은 간접세, 706조 심판원은 아주 드물게 소득세및법인세법(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TA, 1988)하의 특정한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관련된 사건의 심리를 행한 후 심판결정을 받음
 -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불복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완전한 분리성·독립성을 가진 재결기관으로서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심판기관임
-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심리대상을 달리하는 같은 심급의 심판기관임
 - 조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선택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인지세 등)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위원회의 관할이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만을 관할함
- 조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선택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음
 - 일반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정통한 비전문가에 의하여 불복사건이 심리·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사실 문제에 관한 불복사건의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

- 특별위원회는 전문가에 의하여 불복사건이 심리·결정되기 때문에 복잡한 불복사건 또는 법률문제가 포함된 불복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음

1) 일반위원회 · 특별위원회

가) 일반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구성¹⁶⁾

- 일반위원회는 영국의 전통적인 배심제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¹⁷⁾. 납세자가 지역적 편의를 누리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결기관임
- 일반위원회는 일반위원으로 구성되며, 일반위원은 세무지역(separate areas: divisions)마다 임명됨¹⁸⁾
 -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대법관(the Lord Chancellor)이 임명하며, 스코틀랜드에서의 임명권한은 지방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이 임명함¹⁹⁾
 - 일반위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음²⁰⁾
 - 일반위원은 법률, 회계, 조세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음
- 대법관 또는 지방장관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일반위원에게 여비나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보수는 없음²¹⁾
 - 일반위원은 대법관 또는 지방장관이 선임하는 기간 동안 75세까지 재직할 수 있

16) 『租稅訴訟法』, 강인애, 한국조세연구소, 2006 발췌 요약

17)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국·박훈,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p. 90

18) TMA(Taxes Management Act) 1970, §2(1)

19) TMA 1970, §2(2), §2(3)

20) TMA 1970, §5(1)

21) TMA 1970, §2(5)

음²²⁾

- 일종의 명예직이며 비상근직임
- 일반위원회에서는 법률가 또는 법률 지식이 있는 1인의 서기(clerk)와 필요한 경우에는 서기보(assistant clerk)를 임명할 수 있음²³⁾
- 서기는 일반위원회의 심판일정을 정하고 사건의 기록을 관리함
 - 법률적인 지식으로 일반위원들의 자문을 담당함
 - 대법관 또는 지방장관은 재무부(the Treasury)의 승인을 받아 서기 또는 서기보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서기와 서기보는 상근직(full-time clerk)임
 - 재직기간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일반위원회는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령을 75세까지 연장할 수 있음²⁴⁾
 - 일반위원회는 물론, 대법관 또는 지방장관은 일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서기 또는 서기보를 해임할 수 있음
- 특별위원회²⁵⁾를 구성하는 특별위원은 대법관이 지방장관의 자문을 통해 임명하며, 또한 특별위원 중에서 위원장(the presiding Special Commissioner)을 임명함²⁶⁾
- 특별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²⁷⁾
- 법원및법조인법(the Court and Legal Services Act, 1990) 제71조에 따른 변호사 등 법조 업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스코틀랜드에서는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²⁸⁾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

22) TMA 1970, §2(7)

23) TMA 1970, §3(1),(2),(3)

24) TMA 1970, §3(5)

25) 잉글랜드(런던, 맨체스터), 스코틀랜드(에딘버러), 북아일랜드(벨패스트)에 심판원 상설

26) TMA 1970, §4(1)

27) TMA 1970, §4(2)

28) 법정 변호사와 소송 의뢰인 사이에서 재판 사무를 취급하는 하급 변호사로서 법정에 나서지 않음

진 사람

- 북아일랜드에서는 변호사회의 구성원(a member of the Bar) 또는 북아일랜드 대법원의 사무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일반위원과는 달리 특별위원은 임기가 없으며(종신직),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으며, 70세에 정년퇴임함²⁹⁾. 그러나 경우에 따라 그 연령을 75세까지 연장할 수 있음

나) 일반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불복대상과 불복청구기한

□ 불복대상은 확정신고(a self-assessment)에 대한 경정(amendment) 또는 불신고에 대한 결정(assessment)임³⁰⁾

□ 납세자는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통지(notice of amendment) 또는 불신고에 대한 결정통지(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복청구서(notice of appeal)를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조사기간 중에 경정을 한 경우에는 조사종료의 통지를 받은 후에 비로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 조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조세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지만 심판청구인이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면 조세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세액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불복기간을 경과한 불복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나, 검사관(Inspector)³¹⁾ 또는 국세청장(the Board)이 납세자가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reasonable excuse)가 있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지체없이 불복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적법한 불복청구로 인정함³²⁾

29) TMA 1970, §4(3A)

30) TMA 1970, §31(1)

31) 세무공무원

32) TMA 1970, §49(1)

- 그러나 조세검사관 또는 국세청장이 지연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함

다) 일반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불복청구자의 적격

- 국세청으로부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통지(notice of amendment) 또는 불신고에 대한 결정통지(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납세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 또한 불복청구인은 조세전문가를 불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

라) 일반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불복청구서와 불복 이유

- 불복청구서에는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에는 불복 이유를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당해 불복을 심리하는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납세자가 불복 이유를 누락한 것이 고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 이유를 추가할 수 있음³³⁾

마) 일반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심리대상

- 불복사건은 대부분 일반위원회가 관할하나, 납세자(appellant: 청구인)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위원회 대신 특별위원회를 선택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³⁴⁾
- 납세자가 특별위원회를 선택하려면 불복기간 내에 불복청구서 또는 다른 서면신청서에 따라 세무공무원(검사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특별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통지하여야 함³⁵⁾
 - 이러한 선택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위원회의 관할로 불복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게 됨

33) TMA 1970, §31A(6)

34) TMA 1970, §31D(1)

35) TMA 1970, §46(1)

- 국세청장에 의한 세액결정 또는 소득세및법인세법(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TA, 1988) 제350조³⁶⁾에 의한 세액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은 특별위원회가 관할함³⁷⁾
 - 일반위원회의 심리대상은 특별위원회가 관할할 수 없음³⁸⁾

- 지방장관의 동의하에 대법관은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리대상을 조정하는 규정(regulations)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리대상에 대한 결정을 함
 - 또한 일반위원회의 관할 세무지역(division)을 조정하는 규정을 제정함³⁹⁾

- 조세관리법(Taxes Management Act)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또는 증권의 평가에 관한 문제⁴⁰⁾
 - 소득세및법인세법(the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TA, 1988)의 각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⁴¹⁾
 - TA 제16편(상속재산에 대한 관리)
 - TA 제15편 제 I A장(재산양도자의 납세의무) 또는 제 I B장(재산양도자에게 지급된 자본총액에 관한 규정)
 - TA Chapter III (해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 TA 제747조 제4항 (a)(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TA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채광권 소유자의 관리비용)
 - TA 제459조 및 제460조(일정한 친교단체의 면세)⁴²⁾

36) 과세소득 중 스케줄 D의 케이스 III에 따라 지불하는 annual payment(이자 제외), 연금, 또는 특허권사용료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금의 계산서(an account of the payment)를 교부하여 그 지급시에 세무공무원이 소득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7) TMA 1970, §31(C)

38)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er) Explanatory Leaflet, p.1

39) TMA 1970, §46A(1)

40) TMA 1970, §46B(3)

41) TMA 1970, §46B(4)

42) TMA 1970, §46C(3)

- TA 제467조(일정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의 면세)
- TA 제527조, 제534조, 제536조 및 제38조(특허권사용료, 저작권사용료 등의 공제)
- TA 제18편 제 I 장(자본의 면세)
- 불복쟁송이 국세청과 관련된 문제의 청구⁴³⁾
- 소득세및법인세법(TA) 규정 적용상의 문제

바) 일반위원회 · 특별위원회의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절차와 효력

- 심리절차에 관한 규칙 및 심판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일반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리절차에 관해서는 일반위원회 규칙(General Commissioners Regulations, 1994: GCR) 및 특별위원회 규칙(Special Commissioners Regulations, 1994: SCR)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심리절차에 관하여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각자 따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비슷함
 - 일반위원회(심판부)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명 이상의 일반위원이심리함⁴⁴⁾

(1) 일반위원회의 심리절차

- 일반위원회의 불복심리는 문서심리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인 청구인(납세자)과 과세청의 담당자를 소환하여 심리(hearing)의 절차를 밟는 것이 특징임
 - 일반위원회의 심리는 비공개(private)를 원칙으로 함⁴⁵⁾
 - 특별위원회의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심리의 방식은 위원회가 당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쟁점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 광범위한 재량이

43) TMA 1970, §46C(1)

44) TMA 1970, §44(5)

45) GCR §13

인정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형식에 구속받지 않음⁴⁶⁾

○ 위원회는 심리기일에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증거제출을 명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음⁴⁷⁾

□ 위원회는 청문기일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⁴⁸⁾

○ 위원회 또는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하고 복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만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 과세처분(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에게 있음. 추계과세(estimated assessment)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함

- 과세관청이 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 어떤 실정법에 의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의 법률문제가 제기된 경우 및 사위(詐僞) 또는 고의의 태만(willful default)에 기하여 과세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함

□ 위원회는 심리에 있어서 청구인이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및 청구인의 증거 제출에 의한 부당한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인용할 수 있음

□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심리기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전(청문기일의 1주일 전)에 서기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에서 증거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표명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함. 위원회는 증거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6) GCR §15(2)

47) GCR §15(3)

48) GCR §9

고 인정될 때에는 증거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심리를 하는 도중에는 위원회의 허가가 없는 한 증거의 진정성립을 다투거나 이를 보강하기 위한 감정을 신청할 수 없음. 그러나 사전에 증거를 공개할 것을 상대방과 합의하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음⁴⁹⁾
- 당사자가 동의하면 서증(書證)은 진정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어느 당사자가 위원회에 제출된 서증을 수용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당해 서증은 기재된 작성자에 의하여, 기재된 일자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서증이 사본인 경우에는 진정한 문서의 사본으로 간주됨
 - 그러나 그 서증의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 성문법 또는 보통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음⁵⁰⁾
- 여러 심판부에 계속되는 사건이 공통된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아직 심리를 개시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을 특정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할 것을 명할 수 있음⁵¹⁾
 - 불복사건에 관계되는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에게 당사자로서 참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심리절차를 종결하면 위원회는 결정을 하여야 함. 결정은 심판부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과반수의 결의로 행함⁵²⁾
 - 그러나 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심판부의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

49) GCR §9

50) GCR §5

51) GCR §7(1)

52) GCR §7

- 결정은 문서로 작성하여 당해 심판부 위원들이 서명하여야 하며, 서기가 그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에 그 효력이 생긴
- 결정문에는 일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⁵³⁾

(2) 특별위원회의 심리 및 결정

-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명의 특별위원에 의하여 심리하며, 다만 복잡한 사건 등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특별위원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음⁵⁴⁾
- 특별위원회의 심리절차는 대체적으로 일반위원회와 같음
- 특별위원회의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그러나 납세자(청구인) 또는 세무공무원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음⁵⁵⁾
 - 또한 특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비심리(preliminary hearing)를 할 수 있으며, 심리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음⁵⁶⁾
- 특별위원 1인이 심판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결정하지만, 2인 이상이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로 결정함
 - 2인 이상의 위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 의견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당해 심판부의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⁵⁷⁾
 - 특별위원회의 결정에는 쟁점이 된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사실인정의 내용과 판단 이유를 밝혀야 함⁵⁸⁾

53) GCR §16(2)-(4)

54) TMA §45(1),(3)

55) SCR §15

56) SCR §9

57) SCR §18(2)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Presiding Special Commissioners)은 특별위원회의 결정문을 출판할 수 있음⁵⁹⁾

○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선례가 됨

(3) 불복청구와 집행부정지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이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경정 또는 결정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납세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불복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연기해 줄 것을 청구(postponement application)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그 연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집행이 보류됨⁶⁰⁾

○ 따라서 불복청구의 단계에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됨은 납세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High Court)에 제소하여 소송계류중인 경우와 같음⁶¹⁾

(4) 불이익변경과 결정의 효력

□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결정(determination)으로 세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음⁶²⁾

○ 따라서 불복청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한 때에 법원에 제소할 것을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됨⁶³⁾

○ 위원회에서 불복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같은 쟁점을 가지고 동일 연도에 다시 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음. 즉, 既判力(기판력) 내지 一事不再理(일사부재리)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별개의 쟁점을 가지고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58) SCR §18(4)

59) SCR §20

60) TMA §55(2),(3)

61) TMA §56(9)

62) TMA §50(6),(7)

63) TMA §46(2)

(5) 불복청구의 취하

- 청구인이 불복청구서를 위원회에 접수시킨 후에는 과세관청과 청구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불복청구를 취하할 수 없음
- 불복청구의 취하가 인정되는 경우인 과세관청과 청구인 사이에 화해(settling of appeals by agreement)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 함은,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취하의 뜻을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과세관청이 당해 취하의 통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임⁶⁴⁾
- 불복청구의 취하를 제한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이익변경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사행적 심리로 불복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6) 화해(합의에 의한 해결: settling of appeals by agreement)

-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청구인과 세무공무원(Inspector or other proper officer of the Crown)은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인 부과결정(assessment or decision)을 인용, 변경 또는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화해)를 할 수 있음⁶⁵⁾
 - 화해는 화해통지서의 제출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생김
 - 화해통지 후에 과세관청이 당해 합의에 의한 과세가 불충분한 것임을 발견(discover)하더라도 추가부과(additional assessment)를 할 수 없음
 - 그러나 화해에 의한 구속력(기판력)은 합의한 쟁점에만 미치므로 쟁점이 다른 새로운 부과처분은 할 수 있음. 또한 당사자 쌍방의 사실에 관한 착오에 기하여 화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화해는 무효이므로, 납세자는 불복절차를 계속할 수 있음

64) TMA §54(4)

65) TMA §54(1)

- 납세자인 청구인에게는 화해에 대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음. 즉, 청구인이 화해일로 부터 30일 내에 세무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당해 합의를 철회 또는 취소(repudiate or resile)하는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화해는 실효됨⁶⁶⁾
 - 또한 구술에 의한 화해(verbal agreements)는 당사자의 어느 편에서 서면으로 확인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⁶⁷⁾

2) 부가가치세 · 관세심판원의 조세불복제도

가) 부가가치세 · 관세심판원의 조직과 구성

- 부가가치세,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불복제도에 대해서는 주로 1994년의 부가가치세법 (VATA) 제5편 제82조 내지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⁶⁸⁾
 - 부가가치세와 관세(customs) 및 소비세(excise)에 관한 불복사건은 부가가치세 · 관세심판원(VAT and Duties Tribunal: VADT)이 관할함
- 부가가치세 · 관세심판원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해서는 1994년의 부가가치세법 부칙12 제61조(Schedule 12, Section 61)에서 규정하고 있음.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와 북아일랜드에 각각 부가가치세 · 관세심판원이 상설됨⁶⁹⁾
- 부가가치세 · 관세심판원에는 원장(president of VAT tribunals)을 두는데, 원장은 영국 내 전지역에서 부가가치세 · 관세심판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며, 원장은 대법관이 지방장관의 의견을 들어 임명함⁷⁰⁾. 원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10년 이상 법원및법조인법(the Court and Leghal Services Act, 1990) 제71조에서 규

66) TMA §54(2)

67) TMA §54(3)

68) VATA §82(1), (2)

69) VATA Schedule 12, §61, 1-(1)

70) VATA Schedule 12, §61, 2-(1),(2)

정하는 변호사 등의 법조업무를 경험한 일반적 자격을 가진 사람

- 스코틀랜드에서는 10년 이상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solictor)의 경력이 있어야 함
- 북아일랜드에서는 10년 이상 변호사회의 구성원(a member of the Bar) 또는 북아일랜드 대법원의 사무변호사의 경력이 있어야 함⁷¹⁾
-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장의 자격은 특별위원회와 같고, 그 임명권자도 특별위원회의 경우와 동일함

□ 원장은 하시라도 사직(resign)할 수 있으며, 72세가 되는 해의 말일 또는 연임된 경우에는 75세가 되는 날에 퇴직(vacate)함⁷²⁾. 그리고 원장은 대법관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또는 보수(salary or fees)를 받음⁷³⁾

□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의 심판부는 개정기간에 의장(chairman sitting)과 다른 2명의 위원(의장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 또는 다른 1명의 위원(의장 포함하여 2명으로 구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단독으로 구성됨⁷⁴⁾

□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 심판부가 의장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의장 포함하여 2명으로 구성된 경우에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짐⁷⁵⁾

□ 매 개정기간마다 의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임명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 부칙12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의장명부(a panel of chairmen)의 구성원 중 적정한 자가 되며, 심판원의 다른 위원은 위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다른 위원명부(a panel of other members)의 구성원 중 선임된 적정한 자가 되는데, 다른 위원의 선임은 원장 또는 원장에 의하여 임명된 의장명부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루어짐⁷⁶⁾

71) VATA Schedule 12, §61, 2-(2)

72) VATA Schedule 12, §61, 2-(3)

73) VATA Schedule 12, §61, 3-(6)

74) VATA Schedule 12, §61, 5-(1)

75) VATA Schedule 12, §61, 5-(2)

-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은 의장명부와 다른 위원명부를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 각각 두며, 각 의장명부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은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의 원장대리(Vice-President of VAT tribunals)가 됨⁷⁷⁾
- 의장명부 구성원의 임명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대법관, 스코틀랜드에서는 항소법원의 원장(the Lord President of the Court of Session),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 수석법관(the Lord Chief Justice of Northern Ireland)이 행함. 그러나 다른 위원명부의 구성원은 재무부에 의하여 임명됨⁷⁸⁾. 의장명부 구성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잉글랜드와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법원및법조인법(the Court and Legal Services Act, 1990) 제7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등의 법조업무를 경험한 일반적 자격을 가진 사람
 - 북아일랜드에서는 7년 이상 변호사회의 구성원(a member of the Bar) 또는 북아일랜드 대법원의 사무변호사의 경력이 있어야 함
 -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7년 이상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의 경력이 있어야 함⁷⁹⁾. 그러나 위원명부의 구성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의 의장은 하시라도 사직할 수 있으며, 70세가 되는 날에 퇴직함.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75세까지 연임될 수 있음⁸⁰⁾
-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의 의장에게는 대법관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또는 보수(salary and fees)가 지급되며, 다른 위원에게도 보수가 지급됨⁸¹⁾

76) VATA Schedule 12, §61, 6, 7

77) VATA Schedule 12, §61, 7-(1),(2)

78) VATA Schedule 12, §61, 7-(3)

79) VATA Schedule 12, §61, 7-(4)

80) VATA Schedule 12, §61, 7-(6)

81) VATA Schedule 12, §61, 7-(8)

□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서는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의 심판부 위원은 어떤 배심원도 맡지 않아도 됨⁸²⁾

나)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의 불복제도

□ 납세자는 VATA(1994) 제84조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⁸³⁾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의 등록 또는 등록의 취소(cancellation)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재화의 취득, 또는 VATA 제84조 제9항에 의하여 회원국 외의 장소로부터의 재화의 수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 個人(a person)에 대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input tax)의 총액
- VATA 제13조 제5항에 기하여 제정된 규칙에 의한 환급청구(claim for a refund)
- VATA 제18A조에 의하여 행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a decision of the Commissioners)
 - 개인에 대한 보세창고운영자(a fiscal warehousekeeper)의 면허 여부, 또는 그 면허의 부대조건에 관한 결정
 - 위 면허의 취소결정
 - 어떤 전제조건에 따른 보세창고운영자의 면허 취소결정
- VATA 제26조에 의한 공제될 매입세액의 비율
- VATA 제27조에 의한 납세의무자(a taxable person)의 환급청구
- VATA 제35조에 의한 환급세액(refunds)의 총액
- VATA 제36조 또는 1983년의 VATA 제22조에 의한 환급세액의 청구
- VATA 제40조에 의한 환급세액의 총액
- VATA 제43조에 의한 신청의 거부
- VATA 제48조 제7항 또는 부칙11의 제4(2)항에 의한 담보요구(the requirement of any security)

82) VATA Schedule 12, §61, 8

83) VATA §83

- VATA 제54조에 의한 허가의 거부 또는 취소, 또는 기타 허가의 거부 또는 취소
- VATA 제59조 내지 제69조에 의한 추징금 또는 가산세(penalty or surcharge)의 납부 책임
- VATA 제61조 제5항에 의한 추징금 결정
- VATA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73조 제7항, (제7A조) 또는 (제7B조), 또는제75조에 의하여 불복청구인(appellant)이 신고를 한 기간에 대한 부과결정(assessment) 또는 그 결정세액
- VATA 제76조에 의하여 부과된 추징금, 환급세액의 이자 또는 가산세의 총액
- VATA 제77조 제4항에 의한 추징금의 부과결정
- VATA 제78조에 의한 환급세액에 대한 이자결정 또는 그 이자총액
- VATA 제78A조 제1항에 의한 환급세액에 대한 이자결정 또는 그 이자결정 총액
- VATA 제80조에 의한 환급청구, 제80조(제4A조)에 의한 환급세액결정 또는 그 결정 환급세액의 총액
- VATA 제80B조 제1항에 의한 환급세액결정 또는 그 결정환급세액의 총액
- VATA(1994년) 부칙 1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추가명령(direction or supplementary direction)
- VATA(1994년) 부칙 6의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VATA(1983) 부칙 4의 제2항에 의한 명령
- VATA(1994) 부칙 1의 제1항에 의한 명령
- VATA(1994) 부칙 9A에 의한 명령 또는 부과결정
- VATA(1994) 부칙 11의 제2(6)항에 의하여 공표된 고시(notice published)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가치 인정의 거부
- VATA(1994) 부칙 11의 제2(7)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획과 관련한 허가의 거부 또는 허가기간

□ 이와 같이, 불복대상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기타 처분이 광범위하게 포함됨

- 부가가치세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개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부가가치세·관세심판원에 불복청구(appeal)를 할 수 있음
 - 불복청구인(appellant)이 VATA(1994) 부칙 11의 제2(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신고(returns)를 하고, 또 자신이 납부책임이 있다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한 그 불복청구는 접수(entertain)되지 아니함⁸⁴⁾
 - 불복청구(appeal)가 위 불복청구대상 2, 14, 16 또는 17항(VATA §83(b),(n),(p) or (q))과 관련된 관세소비세청의 결정(decision)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불복청구는 접수되지 아니함
 - 불복청구인이 국세청이 납부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거나 또는 국세청에 예치(deposit)한 경우
 - 불복청구인이 곤궁에 처한 사실을 국세청이 동의하거나, 또는 심판소가 불복청구인이 결정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거나 예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불복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 심판원에서의 심리절차는 약식으로(informal)도 할 수 있음
 - 불복청구가 위 불복대상 16항(VATA §83(p))에서 말한 관세소비세청의 부과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그 부과결정에서 산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적은 것으로 인정되어, 심판원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결정은 심판원에서 경정한 세액의 부과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그 경정한 세액은 불복청구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됨⁸⁵⁾
 - 부가가치세의 불복청구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 국세청의 추징금, 환급세액의 이자 또는 가산세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청구의 경우 (위 불복대상 17항: VATA §83(q)), 심판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⁸⁶⁾

84) VATA §84(3)

85) VATA §84(5)

86) VATA §84(6)

- 불복청구에 의해서 청구인이 납부하거나 또는 예치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불복청구인에 의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인에게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적당하지 않거나 지불되지 않은 세액은 환급되어야 하며, 그 환급세액에는 심판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⁸⁷⁾

- 불복청구가 불복청구인에 대하여 국세청이 행한 선행결정(prior decision)에 기하여 행한 결정에 반대하는 것인 경우에, 선행결정이 VATA 제83조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심판원이 그 선행결정에 반대하는 불복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당해 불복청구를 인용하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⁸⁸⁾

- 화해(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settling appeals by agreement): 개인이 VATA 제83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한 후 심판원이 당해 불복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세청과 불복청구인은 합의하여 불복의 대상인 결정처분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유지하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책임을 면제 또는 취소(discharge or cancel)할 수 있음
 -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마치 심판원이 당해 불복청구에 대하여 합의내용(비용부담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대로 결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됨⁸⁹⁾
 - 그 합의를 한 날부터 30일 내에 불복청구인이 그 합의를 거부하거나 또는 철회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국세청에 통지한 때에는, 위 합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⁹⁰⁾
 - 당사자간의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구술합의)에는, 그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그 조건(terms)에 합의한 사실이 국세청과 불복청구인 상호간에 서면통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위 합의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⁹¹⁾

87) VATA §84(8)

88) VATA §84(10)

89) VATA §85(1)

90) VATA §85(2)

91) VATA §85(3)

다) 심판원 결정 등의 집행(enforcement)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VATA 제83조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행한 심판원의 결정이 법원규칙에 따라 국세청에 의하여 등록(registerd)되면, 그 결정의 결과로서 개인(불복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회수할 부가가치세액과 국세청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액의 납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세액 또는 비용액이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음⁹²⁾

- 스코틀랜드에서 VATA 제83조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행한 심판원의 결정에서 개인(불복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또는 회수할 부가가치세액을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또는 국세청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 그 결정은 그 집행을 위하여 법원기록집(the Books of Council and Session)에 기록(record)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집행됨⁹³⁾

- 북아일랜드에서 VATA 제83조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행한 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개인(불복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회수할 부가가치세액 또는 국세청이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는 판결집행부서(Enforcement of Judgements Office)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음⁹⁴⁾

3. 사법적 조세불복제도

가. 사법제도

1) 개관

- 영국에는 조세사건을 전담하는 조세법원이나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심

92) VATA §87(1)

93) VATA §87(2)

94) VATA §87(3)

판소에서 불복이 있는 경우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영국에는 매우 다양한 법원이 있고 그 이름과 관할도 대륙법계 법원에 비하여 일률적 이고 형식적이지 못함
 - 법원 조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급법원과 상급법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자에는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군법원(County Courty)과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다루는 치안판사법원(Magistrate Court)이 있고, 후자에는 이들의 항소사건을 다루는 고등법원(High Court)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 그리고 형사사건의 항소 심만을 다루는 Crown Court가 있음
 - 항소법원이 High Court와 Crown Court의 상고심을 다루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에는 영국에서도 3심제의 심급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기본적인 법원조직 외에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법원들과 심판소(Tribunal)들이 있으며, 영연방(영국국가연합제국;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의 일부 및 해외 영국령의 최고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하는 추밀원(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이 있음

-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England and 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및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3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국은 각각 다른 사법제도(법원 및 법관)를 가지고 있음
 - 스코틀랜드에는 스코틀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Session in Scotland)이 있고, 북아일랜드에는 북아일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in Northern Ireland)이 별도로 있음
 - 영국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이들 국가에 대한 최종 심의 상소법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대법원 아래 2심급의 법원이 있음
 - 고등법원에서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나 항소법원에서는 판사 3인이 심리하며, 상원에서는 판사 5인이 심리하는 것이 보통임

□ 영국의 전체적인 법원구조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2) 하급법원

가) 군법원(County Court)

□ 군법원은 소액사건 처리를 위해서 1826년에 제정된 군법원법(County Courts Act of 1826)에 의하여 설치되었음

-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약 340지구로 나누어 지구별로 군법원을 1개씩 설치하고, 최소 1회 개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군법원은 민사사건을 다루는 제1심 법원이며, 대법관의 제청으로 국왕에 의하여 임명되는 순회판사(Circuit judge)에 의하여 운영되고, 보통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함

- 사기, 명예훼손, 중상, 무고 또는 위법한 투옥 등의 경우에는 8명의 배심원이 심리함
- 군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민사부(Civil Division of Court of Appeals)로 상소할 수 있음

□ 금전상의 채무불이행(default action)을 당한 원고는 피고의 거주지와 사업장 또는 소원(Cause of Action)이 발생한 장소와는 상관없이 그가 원하는 군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토지의 소유, 물건의 원상회복, 불법방해(nuisance)의 금지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경영하거나 주로 소의 원인이 발생한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토지에 관련되는 소는 그 토지가 위치한 장소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함
- 군법원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음
 - 계약과 불법행위에 기초한 소송
 - 형평법에 관련된 사건
 - 토지의 권원 및 그 소유의 회복에 관한 소송

- 파산
- 회사의 청산
- 유언검인 절차
- 혼인 및 가사절차
- 소액사건: 금액이 3,000파운드를 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의 청구를 받아 들여 조정 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사전심리(pre-trial review): 이것은 당사자가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한 것임
- 특허심판
- 기타의 사건: 양자 · 후견 · 적출 · 민족 문제 · 임대차 등

나)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

- 군법원과 함께 하급법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치안판사로 구성되는 치안판사법원이 있음
- 치안판사법원의 관할지역(commission areas)은 metropolitan district, metropolitan counties, nonmetropolitan counties, London Commission Areas와 City of London Commission Areas 및 City of London 이 있음
 - 치안판사법원은 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을 가지는데, 1977년 형법(Criminal Law Act)은 형사관할권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 ① 살인(Murder)과 과실치사(manslaughter)와 같이 배심 앞에서의 기소에만 심리할 수 있는 범죄
 - ② 대부분의 교통범죄와 같이 치안판사에 의하여 약식으로 심리할 수 있는 범죄
 - ③ 절도와 장물거래와 같이 위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도 심리할 수 있는 범죄
 - 위의 관할 항목 중 치안판사에 의하여 심리될 수 있는 경우는 ②번이며, 이 경우에 치안판사는 평결과 선고를 할 수 있음
 - 치안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형은 6개월간의 구속이며 벌금형은 5,000파운

드까지임

- 건강과 안전, 오염의 경우에는 2만파운드까지 부과할 수 있음
- 보석, 재구속,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 치안판사법원은 민사관할권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양자·가족부양·미성년자의 혼인 허가 등과 같은 가사소송, 퍼브(Pubs)·레스토랑·도박장·카지노의 허가, 지방세(council charge)의 징수와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음
 - 대도시의 유급전문치안판사(metropolitan stipendiary magistrates)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심리할 수 있음⁹⁵⁾

- 치안판사법원은 10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 그리고 14세를 넘었지만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젊은이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청소년 법원이라고 부름. 청소년 법원에서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음

- 치안판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서 형사사건은 형사법원(Crown Court)이나 고등법원의 해당부 법원(Divisional Court)에, 민사사건은 고등법원의 해당부 법원에 항소함
 - 형사법원에의 항소는 오직 피고만이 할 수 있음
 - 항소는 유죄의 판결이나 선고에 대하여, 법률이나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유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허가는 필요치 않음
 - 피고가 유죄임을 인정할 경우에는 선고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음
 - 치안판사법원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고나 검찰은 사실기재서(case stated)에 의하여 고등법원은 왕좌부(Queen's Bench division)에 항소할 수 있음
 - 치안판사들은 사건을 유럽공동체법원(The European Court)에 송부할 수도 있음
 - 하급법원이 관할권 없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중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때, 피고는 고등법원에 하급법원 판사의 결정을 심사하고 사건이송명령(Certiorari)을 발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95) Extradition Act 1989, S. 9

- 1920년의 치안판사법원법(Magistrates' Court Act) 제142조는 피고가 유죄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치안판사들은 그들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형사법원이나 고등법원에의 항소에 대한 대안으로 사건을 재심(rectification)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3) 상급법원

가) 고등법원(High Court)

- 고등법원은 항소법원과 함께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Judicature)을 구성하며, 1심 법원임
 - 고등법원에는 “Justice of High Court”라고 불리우는 97명의 일반법관(Puisne Judge)으로 구성됨
 - 고등법원은 1970년의 사법행정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 of 1970)에 의해 가사부를 새로 창설하였고, 현재 왕좌부(Divisional Court of Queen's Bench), 형평법원(Divisional Court of the Chancery Division), 가사부(Family Division)의 세 개의 부(Division)와 이에 상응하는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왕좌부(Divisional Court of Queen's Bench)

- 모든 보통법사건의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민사와 형사사건에 걸쳐 광범위한 제1심 및 상소심 관할권을 행사함
- 왕좌부는 치안판사법원이나, Crown Court에 의하며 서면으로 문의된 사건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소를 다루며, 하급법원을 감독할 권한을 행사하는 관할권과 재심리(judicial review)를 통하여 그들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직무집행명령(mandamus), 사건이송명령(certorari) 등을 발할 수 있음
 -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 금지명령(writ of prohibition), 절차재심명령(writ of certiorari), 직무집행명령영장(writ of mandamus), 선거사건(election petition) 등에 관한 관할권도 있음
 - 계약과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사건의 제1심 법원이 되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 상소심 관할이며 보통 3인의 판사로 구성되는 연합부(Divisional Court)를 두고 있음
- 1964년부터 이 부에는 상사법원(Commercial Court)도 구성되어 있음

② 형평법원(Divisional Court of the Chancery Division)

- 이 법원은 신탁의 집행, 저당권의 상환 및 행사, 조합소송, 유산의 관리, 토지문서의 정정 및 취소, 토지의 양도 또는 임대계약의 특수이행, 회사청산, 파산사건 등 형평법 문제에 대한 제1심 관할권을 가짐
 - 형평법부의 파산법원은 런던에 있는 군법원(County Court)으로부터 제기된 파산사건을 심리함
 - 일반법관이 18여명 있으며 대법관(Lord Chancellor)에 의하여 지휘되지만, 대법관은 단지 명의상 수장일 뿐이며, 실제로 사건을 심리하지는 않음
 - 대법관을 대신하여 부대법관(Vice Chancellor)이 조직상·행정상의 기능을 수행하며, 실제로 사건을 심리함
 - 이 부에는 회사법원(Companies' Court)이라고 하는 회사사건을 담당하는 독립된 법원이 있음

③ 가사부(Family Division)

- 가사부는 유언집행 및 관리인에 대한 적격 여부, 이혼 및 혼인관계사건의 심리, 사망의 추정, 인지, 입양, 후견, 부부간의 재산분쟁 등 가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음
 - 가사부는 부장(President)과 3인 이상의 부석판사(Puisne Judge)로 구성됨
- 이 외에 고등법원에는 1956년의 공정거래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에 의하여 설치된 공정거래법원(Restrictive Practices Court)과 건설산업에 관한 사건만을 배타적으로 다루는 공인중개인법원이 있음

나) 항소법원(Court of Appeal)⁹⁶⁾

□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나 군법원 또는 Crown Court로부터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이며, 민사부와 형사부의 두 부로 구성됨

① 민사부(Civil Division)

□ 민사부에는 34여명의 항소법원 판사들이 있으며, 대법관의 제청을 받아 수상이 임명되는 기록장관(Master of the Rolls)에 의하여 지휘됨

□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각 부로부터의 상소, 군법원으로부터의 상소, 예심사건에 관하여 판사실에서 내린 판사나 주사(Master)로부터 상소, 고용항소심판소나 토지심판소와 같은 여러 심판소로부터의 상소를 관할함

○ 항소법원은 하급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하거나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음

② 형사부(Criminal Division)

□ 형사부는 민사부와 같이 34여명의 법관이 있는데, 이들은 민사부의 판사와 겸직임

○ 항소법원에는 민·형사부를 포함해서 모두 34여명의 일반법관이 있음

○ 이 부는 부장판사(Lord Chief Justice)에 의하여 지휘됨

○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 3명의 판사가 심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5명 또는 7명이 심리함

□ 부장판사는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형사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이 같은 겸무는 민사부에서도 대법관이 고등법원판사에게 똑같이 요청할 수 있고, 다만 하급법원에서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제척됨

□ 형사부는 Crown Court의 유죄평결(Conviction)과 선고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고, 상소

96) 이병훈, 『영국의 사법제도와 법학교육』 p. 287~289

를 각하하거나 인용하여 새로운 심리를 명함

- “새로운 심리를 명함(order a new trial)”이란 항소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원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을 때 재심리를 명하는 것임
- 검사(Attorney-General)가 오로지 법률적 관점에서만 항소법원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하급심과 법적 관점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원심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대법원(the Supreme Court)

- 2005년 헌법개혁법(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의 제정으로 상원이 담당해 온 최고 법원의 지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최고사법기관인 대법원(Supreme Court)이 창설되었음
 - 대법원이 창설되기 전에는 상원(House of Lord)에서 하급심 법원에서 올라온 사건들의 최종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의 기능을 수행해 왔음
- 영국 대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아래와 같음
 - 일반 공중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상소심
 - 스코틀랜드의 형사사건을 제외한 영국 최종심
 -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민사 항소심 사건의 상고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함
- 대법원은 또한 대법원의 재판과정과 관할에 대한 대법원 규칙(Supreme Court Rules)을 제정할 수 있음
- 새로 만들어진 영국 대법원은 원장·부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종신이 원칙이나 의회 상하 양원 의결에 의한 해임도 가능함
 - 초대 대법관들은 그동안 상원에서 대법관 역할을 맡아온 상원의원 12명으로 구성

되지만, 이는 초대 대법관에만 한정된 예외적 조치임

- 12명의 법관은 수상의 추천을 거쳐 국왕에 의하여 임명됨
 - 대법관 추천에 있어서, 인사위원회(Selection commission)가 별도로 구성되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수상이 추천하는 방식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인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대법관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임
- 대법관 후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위법관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15년 이상 일정한 조건하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정년에 제한은 없음
- 의회 양원의 불신임을 받으면 사임하여야 함
- 대법원이 일단 창설되고 나면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은 귀족의 작위를 받거나 상원 의원이 될 수 없음
- 재판부는 3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되며 재판과정에서 법률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음

5) 추밀원사법위원회(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 추밀원사법위원회는 과거에는 국왕에게 자문과 권고를 하는 일종의 자문기관이었음
 - 현재는 영연방국가나 식민지에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상소심을 다루는 최종 법원으로써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음
 - 추밀원은 대법관, 상원의 상임재판관(Lords of Appeal in Ordinary), 영국의 고위사법관직을 거친 추밀원의원들(Privy Councillors)로 구성됨
 - 이 법원은 국왕의 이름을 발하는 추밀원 명령(Order in Council)의 형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음

나. 조세소송제도

1) 개관

- 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영국에는 조세사건을 전담하는 조세법원이나

행정법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해야 함

□ 영국에서 조세사건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에는 상소(tax appeal)와 재심리(judicial review)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으며, 상소는 실정법상 인정되는 사법불복제도이며, 재심리는 실정법상 인정되지 않는 구제제도임

□ 상소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이나 행정심판기관(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에 관하여 다시 심의(reconsider)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실정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정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소에 의한 사법구제를 받을 수 없음

- 납세자가 과세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됨
-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심판소의 불복단계에서는 분쟁의 사실관계가 확정되며, 분쟁의 법률문제만이 법원으로 넘어감

□ 재심리는 법원이 하급의 행정심사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시적 관할권(supervisory jurisdiction)의 행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구제적 기능의 측면에서 보면 상소에 의한 법정 사법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심리의 존재의의가 있음.

- 재심리는 실정법에 의하지 않는 사법구제수단임
-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Act, 1981) 제31조 및 최고법원규칙(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의 order 53에 의한 사법적 재심리의 신청
 - 조세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불복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상황, 예컨대, ① 과세청이 직권을 과잉행사하였거나 남용한 경우, ② 자연적 정의의 법칙(the rules of natural justice)에 반하거나 행정처분을 한 경우, 또는 ③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불공정하거나 부당하게 결정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영장(mandamus), 금령(prohibition) 또는 사건이송명령(certiorari)에 관한 대권적 명령 중 하나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재심리에 대한 내용은 '3. 비공식적 구제방법과 옴부즈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

였으며, 본장 이하에서는 상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2) 관할법원과 제소절차

- 일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등법원(High Court)에서 조세를 심리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에서는 제소사건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른 결정들도 내릴 수 있음⁹⁷⁾
 - 이 경우 청구인(납세자)뿐만 아니라, 검사관이나 국세청 직원들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조세사건에 대한 제소시 사실 문제에 대하여는 심판단계에서의 재결이 최종적인 것으로, 소송에서는 법률문제만이 대상임

-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인이나 검사관, 국세청 직원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등법원에서 제소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⁹⁸⁾
 -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만이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영국에서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검사관 및 국세청의 세무공무원도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음

-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허가(leave)를 받아 최종심인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상고할 수 있음

- 잉글랜드와 웨일즈 특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다음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High Court)에 항소하는 대신 직접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제소할 수 있음⁹⁹⁾

97) TMA § 56(6)

98) TMA § 56A(1)

99) TMA § 56A(2)

- ① 관련 당사자들이 제소에 모두 동의한 경우
- ② 특별위원회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위원들 앞에서 충분히 주장되고 심리된 법률의 제정에 관련되는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
- ③ 항소법원의 허가(leave)가 있는 경우

□ 스코틀랜드의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사건은 재정법원(the Court of Exchequer)으로 개정하는 스코틀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Session in Scotland)에서 관할하며, 납세자가 그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하여야 함

□ 북아일랜드에서도 사법심의 제1심 관할은 북아일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in Northern Ireland)에 있음¹⁰⁰⁾

□ VAT tribunals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바로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스코틀랜드의 경우를 제외함)¹⁰¹⁾. 대법관은 항소법원에 대한 소송절차에 대하여 규칙(order)을 제정할 수 있음¹⁰²⁾

□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의 제소절차로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불복의 표명(expression of dissatisfaction)”을 하고, 당해 위원회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당해 위원회에 사실기재서(the case stated)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함

□ 법원에의 제소를 함에 있어서 당해 위원회의 결정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실기재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25파운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¹⁰³⁾

100) TMA §§ 56(11), 56A(11), 58(2)

101) VATA § 86(1),(3)

102) VATA § 86(2)

- 사실기재서에 기재하는 사실관계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어야 하며, 사실기재서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재하는 것이 관행임
- 위원회는 사실기재서에 서명하기 전에 양 당사자에게 확인시키고 서명하는바, 서명하면 사실기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확정됨
- 위원회가 서명한 사실기재서는 이를 요구한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당사자는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3) 집행부정지의 원칙

- 조세사건이 제소되어 고등법원이나 항소법원에 계속 중이라도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¹⁰⁴⁾
 - 행정불복심사단계에서의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조세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채택되고 있음
 - 그러나 행정불복심사단계에서는 납세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음¹⁰⁵⁾

4) 심리 및 판결¹⁰⁶⁾

- 법원에 제소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문제를 심리대상으로 하므로, 어떤 문제가 법률문제인가 사실문제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함
 - 위원회는 유일한 사실에 관한 심리기관이지만, 모든 조세사건에는 사실문제와 동시에 법률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통임
 -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용할 법률의 해석 및 적용요건에 관한 것은 물론 법률문제임

103) TMA § 56(3)

104) TMA § 56(9)

105) TMA § 55(3)

106) 강인애, 조세소송법 2006, p. 80

- 사실인정에 있어서 제1차적 사실(primary fact)과 제2차적 사실(secondary fact)로 나누어서 생각할 때, 제2차적 사실은 제1차적 사실로부터 추단(inferene)되거나 연역된 사실의 결론이라고 할 것인바, 위원회가 제1차적 사실로부터 제2차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타당한 법적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결론을 추단 또는 연역하였는가의 문제는 법률문제로 됨

- 법원은 제소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고, 판결로써 사실기재서에 의한 위원회 결정을 파기, 인용, 변경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 이송하거나 적당한 기타 명령을 할 수 있음¹⁰⁷⁾
 -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사항을 승인할 권한은 없음
 - 당사자의 합의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음
 - 행정불복심사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¹⁰⁸⁾

5) 상소¹⁰⁹⁾

-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다시 상소의 허가(leave)를 받아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상고를 할 수 있음¹¹⁰⁾
 - 스코틀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Session) 및 북아일랜드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 in Northern Ireland)의 각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허가 없이 대법원(the Supreme Court)에 상고할 수 있음¹¹¹⁾

107) TMA § 56(6)

108) TMA § 54(1)

109) 강인애, 조세소송법 2006, p. 81

110) TMA § 56(8)

111) TMA §§ 56(10),(11), 58(2)

4. 비공식적 구제방법과 ombudsman

- 조세의 법정구제방법인 상소(Tax appeal) 외에 재심리(Tax review)라는 제도가 있으며, 재심리는 납세자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방법(informal way)임
 - 이러한 재심리제도 외에 의회 ombudsman을 통한 구제방법도 기타 불복제도로 볼 수 있음

가. 재심리(Tax Review)

- 영국의 세무행정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상황은 상소(Appeal)와 심리(Review)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
 - 상소는 제정법에 의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존재하고 그 내용도 제정법에 따르게 됨
 - 반면에 심리(Review)는 비제정법상의 것으로 여기에 이용되는 구제방법으로는 대권적 구제방법(prerogative remedies)과, 사법상의 구제방법이며 형평법(equity)상의 것인 injunction과 declaration을 들 수 있음

1) 대권적 구제방법¹¹²⁾

- 대권적 구제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기록이송명령(certiorari), 금지명령(prohibition), 직무집행명령(mandamus)들이며, 이들은 행정구제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여 왔음
 - 대권적 구제방법은 국왕과 관련된 소송에서만 발하여졌으나, 점차 일반소송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국왕이 자신의 법률상의 대권을 그 신민에게 빌려줌으로써, 왕의 명의로 그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부를 보장하는 데 협력하도록 함

112) 백종인, 『영국의 행정소송제도의 개혁과 배타성의 문제』, p.101~102

가) 기록이송명령(Certiorari)

- 기록이송명령(Certiorari)은 원래 심리나 재심을 위해 하급법원이 소송기록을 왕좌재판소(the Court of King's Bench)에 게시토록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는 이러한 사건기록 이송 목적의 Certiorari는 사실상 폐물이 되었고, 하급법원이나 심판소 및 공공기관의 결정을 ① 관할권의 월권 또는 ②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의 위반 ③ 기록상 명백한 하자(error of law on the face of record) 등의 이유로 취소하는 수단임

나) 금지명령(Prohibition)

- 하급법원이나 심판소의 월권 또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행위나 결정의 집행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발하는 것으로, 기록이송명령(Certiorari)이 retrospective하다면 금지명령(Prohibition)은 prospective한 것임

다) 직무집행명령(Mandamus)

- 공공기관의 공(公)의무의 불이행이 있을때 그 이행을 명하여 그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것임

2) 사권적 구제방법¹¹³⁾

가) Injunction(금지명령)

- 이는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으로서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발하여짐

나) Declaration(선언판결)

-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단순히 확인 또는 선언하는 것으로 그 자체 집행력은 없음

113) 백종인, 『영국의 행정소송제도의 개혁과 배타성의 문제』, p. 102

- 이는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단순히 확인 또는 선언하는 것으로 그 자체 집행력은 없음
- Declaration은 오늘날에는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의 분야에서도 매우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됨
- 행정법상 Declaration의 장점은 그것이 국왕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정부기관의 일권행위에 대한 효과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임

나. 의회 옴부즈만(the Parliamentary Ombudsman)

1) 개관

-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영국 세무행정의 특징 중 하나가 옴부즈만제도의 활용임
 - 의회 옴부즈만제도는 납세자의 불만을 재심리하는 준공식적 방법(a semiformal method)을 제공함
 - 의회 옴부즈만은 행정부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국민에게 불만을 일으킨 불의(injustice)를 조사하는 특정한 일을 하는 의회의 공무원임
 - 의회 옴부즈만에 의하여 불만이 있는 납세자가 재정적 구제(financial redress)를 받을 수 있음
- 1967년 의회감찰법(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 1967)에 의해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Administration이라는 용어로 옴부즈만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1964년 영국 총선거에서 노동당은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선거 공약의 하나로 제시하였고, 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옴부즈만 법안의 입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음
 - 기존의 사후구제제도(법원이나 행정심판소에 의한 행정사안의 구제)로는 구제하기가 곤란한 영역에 대한 불복제도로써 옴부즈만제도가 발전한 것임
- 옴부즈만의 인원은 1명이며, 의회의 건의에 따라 국왕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됨¹¹⁴⁾

114) P.C.A. 1967 Sec.1

- 역대 옴부즈만을 보면 제1대는 전회계감사원장, 제2·3대는 정부의 사무차관, 제4·5대는 변호사출신자가 임명되고 있음
- 옴부즈만으로 임명된자는 staff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으며¹¹⁵⁾,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수십명의 staff들이 국민들이 제출하는 많은 신청서들을 심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국의 거주자이거나, 영국에서 거주 중에 있었던 영국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고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영국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고충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함¹¹⁶⁾

□ 고충에 대한 신청기간은 불복사실이 최초로 고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옴부즈만이 기간을 넘은 고충의 경우라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음¹¹⁷⁾

2) 옴부즈만의 대상

□ 옴부즈만의 대상이 되는 고충이란 법원이나 각종 심판소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행정과 오(in consequence of maladministration)에 관한 것임

- 행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편견이나 처리의 지연 등에 의해서 입게 된 괴로움이 고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영국 국세청이나 관련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의 편견이나 처리의 지연 등에 의해서 납세자가 입게 된 괴로움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신청할 수 있음

- P.C.A. 1967 Sec. 5(2)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다음의 경우에는 조사권을 적용하지 않음

115) P.C.A. 1967 Sec.3

116) P.C.A. 1967 Sec. 6

117) P.C.A. 1967 Sec. 6(3)

- ① 불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소에 대한 상소, 중재, 재심사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처분
- ② 불복이 있는 자가 법원에 대한 소송절차에 의해서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는 처분
- 다만 특별한 정황 때문에 불복이 있는 자가 소송절차에 의한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조사를 할 수 있음
- P.C.A. 1967 Sec. 5(2)의 적용예외 규정에 의해서 국세청, 조세심판소 및 부가가치세 심판소에 대해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 예를 들면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에 의한 세액상의 불복 등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에게 고충을 제기할 수 없음
- 옴부즈만은 조세심판소 심의회의 직권상 구성원이므로 옴부즈만과 심의회의와의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취해지고 있음
- P.C.A. 1967 Sec. 5(2)단서에 의해 소송절차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조사권이 적용 제외되고 있는 사안이라 해도 옴부즈만의 재량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고, 조세사안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재량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3) 처리절차와 처리현황

- 정부기관의 행정과오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고충이 있는 자는 문서로 하원의원(a member of the House of Commons)에게 고충 신청을 할 수 있음
 - 고충 신청을 의뢰받은 하원의원은 옴부즈만에 대한 사안의 조사를 접수시킴
 - 접수된 고충사안에 대하여 조사권을 발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결정은 옴부즈만의 재량권임¹¹⁸⁾
- 옴부즈만은 증인의 심문, 선서진술, 자료진술 등의 조사권이 법원과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음¹¹⁹⁾
 - 옴부즈만은 관계정부기관의 공무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118) P.C.A. 1967 Sec. 5

119) P.C.A. 1967 Sec. 8

수 있으므로, 세무행정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의 조사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법원모욕죄에 상당한 행위를 한 자는 법원에 고소됨¹²⁰⁾

□ 옴부즈만에는 조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어떠한 명령을 하는 권한은 없고, 행정기관이 행한 결정을 수정할 권한도 없음¹²¹⁾

- 이러한 옴부즈만의 구제책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① 옴부즈만은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의뢰한 하원의원, 국세청장관, 고충신청인의 3자에게 조사보고서를 발송하여야 함

- 옴부즈만이 조사사안으로서 다룬 고충에는 행정과오의 혐의가 있는 것이므로 옴부즈만의 조사가 시작되면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사안의 처리에 대해 재검토가 행해짐

- ‘국세청이 적절하게 업무를 행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이 장관의 사무이므로, 국세청장관은 그 부서 내에서의 행정과오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기대를 전제로 해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행정기관 스스로가 고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음

② 옴부즈만이 국세청이 취한 대응책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옴부즈만 일반보고서 또는 수시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조치가 불비하다는 것을 기재할 수 있음¹²²⁾

- 이 경우에는 고충신청인의 행정과오에 대해서 직접 시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옴부즈만 보고서가 유력한 압력으로 되어 그 후에 법적 개선이 행해진다고 하는 구체적 효과도 있을 수 있음

③ 옴부즈만이 조사한 결과 행정과오가 있는데, 그 행정과오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지 또는 시정을 하는 노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옴부즈만이 적절하다고 생각

120) P.C.A. 1967 Sec. 9

121) 김민훈, 『세무행정에서의 옴부즈만제도 - 영·미의 세무옴부즈만을 중심으로』 p. 185~186

122) P.C.A. 1967 Sec.10(4)

한다면 그 사안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¹²³⁾

- 이 규정에 의한 특별보고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는 듯하지만, 옴부즈만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는 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함

- 옴부즈만 2007-08년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2007-08)에 따르면, 2007~08년 동안 옴부즈만에 접수된 고충들 중 국세청과 관련된 세무사안들은 약 2,342건으로 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 이어 두 번째로 고충사안이 많이 들어오는 정부기관으로 보고되고 있음

〈표 II-2〉 2007~08년 고충건수가 많이 접수된 정부기관 top 5

정부기관	접수된 고충건수
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574
국세청(HM Revenue& Customs)	2,342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549
이민국(Home Office)	507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277

Source: 2007-08 Annual Report, 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 2007~08년 동안 접수된 고충사안들 중 옴부즈만에서 조사권을 발동한 사건들을 관련 정부기관들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음
- 접수된 고충사안들 중에서 세무관련 사안들에 대하여 가장 많이 조사권이 발동되고 있음

〈표 II-3〉 2007~08년 옴부즈만 조사권이 결정된 주요 정부기관별 사안들

정부기관	조사권을 발동한 고충건수
국세청(HM Revenue& Customs)	160
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78
이민국(Home Office)	48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22

Source: 2007-08 Annual Report, 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123) P.C.A, 1967 Sec. 109(3)

Ⅲ. 새로운 조세불복제도

1. 개 관

- 2009년 4월 1일부터 영국의 기존 조세심판제도는 새로운 단일심판제도로 변경되었음¹²⁴⁾
 - 새로운 심판원은 2심으로 구성되며, 쟁송 분야와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하나의 심판기관에서 사건을 심리함
 - 새로운 조세불복제도안은 통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그리고 납세자 및 기타 관련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객 맞춤형 심판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임

- 새로운 조세불복제도안에 따르면, 모든 조세사건들을 통일적으로 한 곳에서 관장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판기관을 구성하게 됨
 - 법운영및심판원위원회(Administrative Justice and Tribunals Council)에 의해 2007년 심판원·법원집행법(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을 제정함
 - 2007년 심판원·법원집행법으로 설립된 새로운 심판원의 구조는 제1심 조세심판원(Tax Chamber of the First-Tier Tribunal)과, 제2심 조세심판원(Finance and Tax Chamber in the Upper Tribunal)의 2심제도로 구성됨

- 현재 새로운 Tribunals Tax Appeals Processing Centre가 버밍엄에 설립되고 있음. 국세청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납세자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심판기관에 불복신청을 하게 됨¹²⁵⁾

124) <http://www.financeandtaxtribunals.gov.uk/taxAppealsModernisation.htm>

125) <http://www.financeandtaxtribunals.gov.uk/financialServicesandMarkets/latestNews.htm>

- 제2심 조세심판원은 영국 전역의 사법권에 영향을 끼치는 기록법원(Court of Record)의 성격을 가지며(그러나 기록법원보다 상급법원), 런던에 설치되며, 제1심 조세심판원 사건의 불복, 집행, 결정을 관할함
 - 제2심 조세심판원의 대부분 사건은 법적 관점에서 서면이나, 필요하다면 심리(審理)에 의해 처리될 것임

2. 제1심 조세심판원(Tax Chamber of the First-Tier Tribunal)

- 납세자가 국세청(HMRC)의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1심 조세심판원에 해당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¹²⁶⁾
 -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임
 - 불복청구 대상은 직접세, 간접세 등 모두를 포함함¹²⁷⁾
 -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인지세, VAT, 관세, 개별소비세,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각종 법정 부담금, 돈세탁규정2007(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과 관련된 국세청 결정 등

가. 제1심 조세심판원 구성¹²⁸⁾

- 여왕이 Lord Chancellor(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심판원장(Senior President of Tribunals)을 임명하며, 심판원장은 시니어재판관(senior judge) 성격으로 제1심 조세심판원과 제2심 조세심판원을 관할함.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 사람이 Lord Chancellor(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심판원장으로 임명됨¹²⁹⁾

126) <http://www.tribunals.gov.uk/Tax/Index.htm>

127) Tax Chamber of the First-tier Tribunal, Making an appeal, Annex A

128) http://www.opsi.gov.uk/acts/acts2007/ukpga_20070015_en_2

129)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schedule § 1

- 심판원장은 잉글랜드, 웨일즈의 수석재판관
- 민사최고재판소장
- 북아일랜드의 수석재판관

□ 제1심 조세심판원의 판사(judges)와 심판부의 구성 의원(members)은 다음과 같음¹³⁰⁾

- 여왕이 Lord Chancellor(법무부 장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제1심 조세심판원의 판사를 임명하며, 제2심 조세심판원의 판사, 고용심판원장의 패널 의원 등도 제1심 조세심판원 판사가 될 수 있음
 - 스코틀랜드에서는 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북아일랜드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 또는 사무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의원의 구성은 심판원장의 추천을 받거나, 제2심 조세심판원 의원단의 구성원도 가능하며, 고용심판원(고용심판원장의 패널 의원 제외)의 패널 구성원 등도 가능함
 - Lord Chancellor(법무부 장관, 대법원장)는 심판원장의 동의하에 심판부의 구성 의원을 지명할 권한이 있음¹³¹⁾

□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 사람은 제1심 조세심판원의 특별판사가 될 수 있음

- 잉글랜드, 웨일즈의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판사
-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 법원(Court of Session) 판사
- 잉글랜드와 웨일즈 또는 북아일랜드 고등법원(High Court)의 배석판사(puisne judge)
- 주(州) 법원의 순회 재판판사(circuit judge)
- 스코틀랜드 주(州) 장관(sheriff)
- 북아일랜드의 주(州) 민사법원(county court) 판사
-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지방법원판사(district judge)

130)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schedule § 2

131)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schedule § 2 2(1)

○ 지방법원판사(Magistrates' Court: 치안재판소)

□ 판사는 다른 심판원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70세가 되는 해의 말일에 퇴직(vacate) 함¹³²⁾. 그리고 Lord Chancellor(법무부 장관, 대법원장)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경비를 받음

□ 과거의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일부 구성원이 제1심 조세심판원의 판사(judges)와 심판부의 구성 의원(members)을 맡고 있음¹³³⁾

○ 현재 제1심 조세심판원장은 과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Presiding Special Commissioners)이었던 Stephen Oliver QC가 임명되었음

나. 제1심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대상

□ 제1심 조세심판원은 자체적으로 독립 운영하며 주로 국세청 결정의 오류, 경정의 사유가 존재, 결정의 무효화 사건(재심리 등)을 심리 결정함

○ 주로 과세표준결정에 의한 처분과 벌금(가산금) 등에 관한 것임¹³⁴⁾

다. 제1심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에서 제외되는 처분

□ 법의 변경을 요하거나, 국세청의 행정업무 처리 불만족의 경우

○ 국세청의 행정업무에 대한 고충은 고충담당자(Complaints Manager)에 의해 처리할 수 있음¹³⁵⁾

132) 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schedule §9

133) Tribunals Service, 보도자료, 2009. 4. 1

134) Tax Chamber of the First-tier Tribunal, Making an appeal

135) <http://www.hmrc.gov.uk/dealingwith/complain.htm>

라. 제1심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기한

-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기한 내에 불복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1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제1심 조세심판원의 불복청구의 분류

- 불복청구인이 제1심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다음의 4가지 중 하나로 분류되어 심리함¹³⁶⁾
 - Default Paper로 분류된 불복청구서는 제1심 조세심판원이 심리 없이 관련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함. 국세청은 42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불복청구인은 30일 이내에 국세청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제1심 조세심판원에 송부하여야 함
 - 신고납부에 관련된 가산세 등
 - 소득세 가산세
 - Basic은 심리절차가 있을 수도 있으며, 조사와 심리를 위해 불복청구인은 장부·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정보 통보, 지연납부, 신고불성실 등의 가산세
 - Standard으로 분류된 불복청구서는 Default Paper, Basic, Complex로 분류되지 않은 사건임. 국세청은 60일 이내에 청구서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심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함
 - Complex로 분류되는 불복청구서는 다음과 같음
 - 복잡한 사건 또는 오랜 심리를 요하는 사건
 - 복잡하거나 중요한 원리 또는 문제의 사건
 - 큰 금액의 사건

136) First-tier and Upper Tribunals: Preparing for tribunal: Categories of tribunal case(ARTG8350)

바. 제1심 조세심판원의 심리절차

□ 심리(hearing) 유무의 결정¹³⁷⁾

- 소송 또는 소송의 일부를 수행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The First-tier Tribunal (Tax Chamber) Rules 2009의 제26조 6항과(심리를 열지 않고 불출석 서류에 따른 결정)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리를 수행하여야 함
 - 각 당사자가 심리 없이 사건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 법원이 심리 없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심리의 통지¹³⁸⁾

- 법원은 심리에 참석할 권한이 부여된 각 당사자에게 모든 심리(휴회 및 연기를 포함)의 시간 및 장소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 심리의 공지시간은 최소 14일 안에 이루어져야 함. 단, 법원이 다음과 같이 14일 미만을 제시한 경우는 그렇지 않음
 -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또는,
 -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

□ 심판원 절차법(Tribunal Procedure Rules)은 심판원 절차위원회(Tribunal Procedure Committee)에서 제정하며, 제1심판원과 제2심판원의 실무와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인 결정권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¹³⁹⁾

- 이외에 증인 출석과 증언을 포함한 증거 조사, 중재 등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 납세자가 서면으로 불복청구서(notice of appeal)를 제출하면서 불복절차가 시작됨¹⁴⁰⁾. 불복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작성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137) The First-tier Tribunal (Tax Chamber) Rules 2009, § 29

138) The First-tier Tribunal (Tax Chamber) Rules 2009, § 31

139) Tribunals, and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 5(2)

140) Tribunals and Inquiries, part 3(20)

- 청구인의 이름, 주소(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 처분 결정내용 및 불복사유
- 처분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및 이유 통지¹⁴¹⁾

- 심리는 구두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심리에서 제기되는 모든 이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기간은 28일이며, 결정통지 (Part4의 결정은 제외)가 다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결정 진술 및
 -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해당 시기 내에 항소할 수 있음

사. 제2심 조세심판원으로서의 불복청구

□ 제2심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착오(error of law)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건임¹⁴²⁾

- 제1심 조세심판원의 법적용의 오류
- 심리절차의 위반
- 결정의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경우

□ 불복청구인은 제1심 조세심판원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불복이유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아. 제1심 조세심판원 불복청구의 철회

□ 불복청구인은 언제든지 불복신청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음

141) The First-tier Tribunal (Tax Chamber) Rules 2009, § 35

142) Tribunals Service, Tax(Appeal to the Upper Tribunal)

3. 제2심 조세심판원(The Finance and Tax chamber on the Upper Tribunal)

가. 제2심 조세심판원 구성

□ 제2심 조세심판원의 구성원은 아래와 같음

- 판사는 심판원장(Senior President of Tribunals),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여왕의 임명을 받은 자, 제2심 조세심판원으로 발령받은 판사, 이민 심판원(Asylum and Immigration Tribunal)과 사회안전위원회(Social Security Commissioner) 위원 등으로 구성됨
- 그 밖에도 심판원의 구성 의원으로는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은 자, 고용심판원(Employment Appeal Tribunal)과 이민심판원(Asylum and Immigration Tribunal)의 구성원으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어짐

나. 제2심 조세심판원 절차

□ 제1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2심 조세심판원에 상소가 제기된 경우, 제2심 조세심판원은 다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음¹⁴³⁾

- 당사자들의 상소에 대한 거부결정
- 사건에 대한 재결정
- 제1심 조세심판원으로 사건 환송

□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재결정을 하는 경우, 제1심 조세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모든 결정사항을 제1심 조세심판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릴 수 있음¹⁴⁴⁾

- 제2심 조세심판원은 사실문제에 대한 확인 절차도 진행할 수 있음

143) Tribunals, and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 12(2)

144) Tribunals, and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 12(4)

다. 제2심 조세심판원의 기타 권한

-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는 고등법원(High Court)의 권한이었던 재심리(judiciary review)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따라서 의무명령(mandatory order), 금지명령(prohibition order), 취소명령(quashing order), 선언판결(declaration), 강제명령(injunction)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¹⁴⁵⁾
 - 제2심 조세심판원의 재심리에 대한 판결은 고등법원(High Court)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¹⁴⁶⁾

- 제2심 조세심판원은 증인 출석과 검사, 문서 작성과 조사, 그리고 제2심 조세심판원의 기타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는 고등법원(High Court)과 동일한 권한이 인정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항소법원(Court of Session)과 동일한 권한이 인정됨¹⁴⁷⁾

-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과 관련하여,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비용을 사건 당사자들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 비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¹⁴⁸⁾
 - 제1심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되어 올라온 사건
 - 다른 심판원에서 비용과 관련된 명령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심판원 결정에 불복하여 올라온 사건
 - 재심리(judicial review) 사건
 - 제1심 조세심판원에서 이송된 사건
 -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이 사건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비합리적(unreasonably)으로

145) Tribunals, and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 15(1)

146) Tribunals, and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 15(3)

147) Tribunals, and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 25

148) The Tribunal Procedure Act(Amendment) Rules 2009, § 10

행동했다고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판단되어질 때

4. 사법적 조세불복제도

- 사건 관계자들은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항소할 수 있음¹⁴⁹⁾
 - 항소법원에 항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대한 제2심 조세심판원이나 해당 항소 법원(Appellate court)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제2심 조세심판원에 불복하는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항소법원(Court of Appeal in England and Wales),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항소법원(Court of Session), 북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 항소법원(Court of Appeal in Northern Ireland)에 항소할 수 있음

- 항소법원에 사건이 항소된 경우, 항소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음¹⁵⁰⁾
 - 사건 거부
 - 제2심 조세심판원으로 환송
 - 사건에 대한 재결

-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항소법원으로 항소된 사건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불복을 원하는 경우, 영국의 법원구조에 따라 대법원(High Court)에 최종적으로 제소할 수 있음
 - 따라서 2009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조세심판제도에 따르면, 영국의 일반적인 조세불복절차는 제1심 조세심판원-제2심 조세심판원-항소법원-대법원의 순서로 조세사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음

149) Tribunals, and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 13

150) Tribunals, and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 § 14(2)

5. 비공식적 구제방법과 ombudsman

- 조세 관련 구제방법 중 비공식적 구제방법인 재심리(Tax review)제도와 의회 ombudsman 제도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IV. 시사점

1. 영국 조세불복제도의 특징

가. 개정 전의 조세불복제도

- 영국에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조세법원이나 행정법원이 없고, 고유한 세무소송제도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었음
 - 조세불복제도에 있어서는 행정불복전치주의가 채택되어, 국세청의 과세처분(경정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납세자는 먼저 통상의 경우에는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의 사법법원에 제소하여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음

- 불복신청 재결기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준사법적(quasi-judicial)기능을 가진 심판기관임
 -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은 국세청과는 완전히 분리 독립된 제3자 기관이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결을 기대할 수 있었음
 - 또한 소득별로 전문적인 불복신청 재결기관을 나누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음

- 조세분쟁의 사실관계는 행정불복신청의 결정단계에서 확정되며, 일반법원은 법률문제만을 심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었음

- 영국에서는 사법법원에 의한 사법권의 독점이 일반원칙이었으나, 현대 행정현상의 변

화에 대응한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심판소제도가 승인되었음

- 이러한 심판소제도 밑바탕에 흐르는 기본적인 사상은 사법에 대한 공법의 특수성이라든가 일반법원에 대한 심판소의 설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정권한의 중대화 경향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여 갈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다는 특색이 있음

□ 위원회는 분쟁처리기관으로서 일반법원에 비하여 절차적·기술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조직과 구성 및 절차에 있어 사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의 강구에 힘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음

□ 위원회 및 심판소의 결정 가운데 법률문제에 대하여 일반법원에의 상소가 통일적으로 인정되고,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심판소의 결정이유를 게시토록 정함

- 일반사법법원에 의한 사후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재심리(judicial review)를 그 고유의 권한으로 인식하여 사법법원에 의한 감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전통적인 “법의 지배”의 원리 내지 사법적 보장주의가 비록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개정 후 새로운 조세불복제도

□ 2009년 4월 1일부터 영국의 기존 조세심판제도는 새로운 단일심판제도로 변경되었음

- 새로운 심판원은 2심으로 구성되며, 통일적으로 하나의 심판기관에서 사건을 심리함. 새로운 조세불복제도안의 통일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납세자 및 기타관련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일심판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임

□ 새로운 조세불복제도안에 따르면 모든 조세사건들을 통일적으로 한 곳에서 관장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판기관을 구성함

- 법운영및심판원위원회(Administrative Justice and Tribunals Council)에 의해 2007년 심판원·법원집행법(Tribunals Courts and Enforcement Act 2007)이 만들졌으며 이 법으로 설립된 새로운 심판원의 구조는 제1심 조세심판원(Tax Chamber of the First-Tier Tribunal)과, 제2심 조세심판원(Finance and Tax Chamber in the Upper Tribunal)의 2심제도로 구성되었음

- 납세자는 국세청(HMRC)의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1심 조세심판원에 해당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며 불복청구 대상은 직접세, 간접세 등 모두를 포함함

- 제2심 조세심판원은 영국 전역의 사법권에 영향을 끼치는 기록법원(Court of Record)의 성격을 가지며(그러나 기록법원보다 상급법원), 런던에 설치되며, 제1심 조세심판원 사건의 불복, 집행, 결정을 관할함
 - 제2심 조세심판원의 대부분 사건은 법적 관점에서 서면이나 필요하다면 심리(審理)에 의해 처리될 것임

- 새로운 조세심판원의 특징 중 하나가 제2심 조세심판원에 고등법원(High Court)의 고유권한이었던 재심리(judiciary review)에 대한 권한이 동일하게 인정된 점임
 - 따라서 의무명령(mandatory order), 금지명령(prohibition order), 취소명령(quashing order), 선언판결(declaration), 강제명령(injunction) 등에 대한 사항을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직접 결정내릴 수 있음

- 그 밖에도 제2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된 사건에 대한 불복제도는 항소법원으로 연결되며, 증인신문 및 문서 작성 등 많은 부분에서 제2심 조세심판원의 결정사항들이 고등법원과 동등하게 인정되고 있음

2. 우리나라와 비교

□ 우리나라와 영국의 조세불복제도 중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조세심판제도, 조세소송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조세심판제도

- 우리나라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음
- 영국의 경우 개정 전에는 분야별로 여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고, 개정 후에는 제1심 조세심판원 및 제2심 조세심판원의 2심제의 단일화된 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가 가능함

□ 조세심판기관의 독립성

-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인 데 반하여, 영국은 개정 전과 개정 후 조세심판원이 모두 비정부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으로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제도적 보장이 되어 있음

〈표 IV-1〉 우리나라와 영국의 조세심판기관

국가	우리나라	영국	
		2009년 개정 전	2009년 개정 후
조세심판기관	- 조세심판원: 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세청: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감사원: 대통령 직속기관	- 일반위원회, 특별위원회, 부가가치세·관세 심판원, 706조 심판원: 국세청과 독립적인 준사법기관	- 제1심 조세심판원, 제2심 조세심판원: 국세청과 독립적인 준사법기관

□ 조세소송

- 우리나라는 조세관련 행정심판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영국은 별도의 조세법원이나 행정법

원이 없으며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함

〈표 IV-2〉 우리나라와 영국의 조세소송

국가	우리나라	영 국	
		2009년 개정 전	2009년 개정 후
조세소송	국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	조세심판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일반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에 제소 가능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일반법원인 항소법원(Appel Court)에 제소 가능

3. 영국 조세불복제도의 시사점

- 2009년 4월 새로이 도입된 영국의 조세불복제도는 그동안 분야별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여러 심판원들을 단일화하여 하나의 심판제도로 정리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구성원들을 판사들로 임명하여 심판원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였음
 - 20세기 초반부터 영국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다양한 심판원 제도가 발전하고 있었으며, 각 분야별 심판원 절차가 서로 다르게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었음
 - 이에 통일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납세자 및 기타 관련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용자 맞춤형 심판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심판제도가 정리된 것임
- 우리나라는 조세불복제도가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 여러 절차로 분산되어 심판청구(심사청구)를 하려는 납세자들이 불복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불복제도의 병렬적 구조 문제는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할 기회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음
- 영국의 경우는 분야별로 흩어져 있었던 여러 심판원들을 통일된 하나의 제도로 정리함

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고, 보다 효율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단일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상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의 폐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009년 4월 영국의 조세심판원 개정으로 인하여 심판원의 결정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심판원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심인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에 상소할 수 있는 제도로 정리되었음

- 이러한 점은 심판원이 실질적으로는 조세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영국의 조세심판원은 정부와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는 심사청구는 국세청과 감사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완전히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현행 조세심판원은 조직이나 인사, 예산 등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못하여 이러한 부분에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만이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반하여, 영국에서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관이나 국세청의 공무원들도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함

- 이러한 영국제도의 특징은 조세심판결정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의 불복제도를 인정하는 방안 도입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참고문헌

- 강인애, 『租稅訴訟法』, 한국조세연구소, 2006.
- 김민훈, 『세무행정에서의 옴부즈만제도 - 영·미의 세무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한국토지
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28집, 2005. 10.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백종인, 『영국의 행정소송제도의 개혁과 배타성의 문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 손종환, 『영국법상의 행정소송유형』, 사회과학논총 제8집, 1989.
- 이병훈, 『영국의 사법제도와 법학교육』, 헌법학연구 제4호 제2호, 1996.
- 한상국·박훈,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 Yellow Tax Handbook, 2001-02, Tolley.
- British Master Tax Guidem 2007-08, CCH.
- <http://www.generalcommissioners.gov.uk>
- <http://www.financeandtaxtribunals.gov.uk>
- <http://www.adjudicatorsoffice.gov.uk>
- <http://www.opsi.gov.uk>
- <http://www.tribunals.gov.uk>
- <http://www.hmrc.gov.uk>
- <http://www.justice.gov.uk>
- <http://www.ajtc.gov.uk>
- <http://www.dca.gov.uk>
- <http://www.ombudsman.org.uk>

세법연구 09-01

영국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연구

2009년 6월 26일 인쇄

2009년 6월 30일 발행

저 자 김진수 · 김정아 · 정경아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30-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